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(공시송달)공고 제2026-155호

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16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

1. 건　명: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

2. 근　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박○업	68.07.29.	1.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길 **, 107동 ***호 2. 충남 공주시 정안면 한섬지기길 ***	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	■ **처분제목**: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■ **처분원인**: (주)대덕휴비즈*에서 2023.4. 3.~5.30.사이 총 21일간 근로내역 미신고 ■ **반환명령액: 0원(소멸시효 도과)**	1. 폐문 부재 2. 연락 두절

4. 공고기간: 2026. 11. 16.~2026. 12. 1.(15일간)
※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5. 불복사항의 고지방법: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최지은 수사관(Tel. 041-620-742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